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67

발의연월일: 2025. 2. 19.

발 의 자:이만희·서천호·김소희

정희용 · 김기웅 · 권영진

김선교 · 김대식 · 조은희

이달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라 관광단지는 공공편익시설 등을 갖춘 총 면적이 50 만㎡이상인 대규모인 지역에 대해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신청에 의하 여 시·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음.

한편,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여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인구감소지역(이하 "인구감소지역"이라함)에 한해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현행법이 개정되어 2025년 4월 23일 시행 예정임.

이에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정되는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또한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를 시장 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52조제7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43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488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.

제52조제7항 중 "인구감소지역에"를 "인구감소지역 또는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에"로, "인구감소지역을"을 "인구감소지역 또는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률 제20488호 관광진흥법 일부	법률 제20488호 관광진흥법 일부		
개정법률	개정법률		
제52조(관광지의 지정 등) ① ~	제52조(관광지의 지정 등) ① ~		
⑥ (생략)	⑥ (현행과 같음)		
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	⑦		
당시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			
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인	<u>인구</u>		
<u>구감소지역에</u> 속하는 지역의	감소지역 또는 「농업・농촌		
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	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48조		
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	의2제1항에 따른 농촌구조전환		
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	<u> 우선지역에</u>		
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			
<u>구감소지역을</u> 관할하는 시장·			
군수・구청장이 지정한다.			
	<u>인구감</u>		
	소지역 또는 농촌구조전환우선		
	지역을		
⑧ (생 략)	⑧ (현행과 같음)		